

제초제+해충저항성 옥수수 MON 87411 제초제+해충저항성 옥수수 (MON 87411)

1.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위해성 심사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11조(협의요청)

2. 심사 대상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외국의 승인현황
제초제+해충저항성 옥수수 MON 87411	몬산토코리아(유)	제초제+해충저항성	미국, 캐나다 등

3. 심사 경과과정

- '14. 7. 29. 사료용, 가공용 환경위해성 평가 자료에 대한 심사 의뢰 접수
- '14. 7. 31. 사료용, 가공용 환경위해성 평가 자료에 대한 심사 의뢰(재접수)
- '14. 8. 1.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 의뢰(식약처) 접수
- '14. 8. 5. 안전성 평가 자료에 대한 협의심사 의뢰(질본, 환경부, 수과원)
- 본 심사는 재배목적이 아닌 사료용, 농업가공용 및 식품용 제초제+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11의 비의도적 방출에 따른 환경위해성 여부를 심사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의위원회(이하 전문가심사위원회)'에 해당 품목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에 의거하여 안전성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 요청함

4. 심사 방법

- 전문가심사위원회는 제초제+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11이 통합고시의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하고,
- 제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자료"가 과학적인 심사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및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며,
- 재배 목적이 아닌 원형상태로 수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심사함

5. 심사결과

MON87411 옥수수는 딱정벌레목 해충에 대한 저항성과 glyphosate(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획득된 것 이외에는 표현형이나 농업적 특성 등이 일반 품종과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발아특성 등에서 일반 품종과 차이가 없었으므로 잡초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MON87411 옥수수는 재배목적이 아닌 사료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될 확률은 낮으나, 설혹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야생 근연종이 없으므로 타 식물과의 교잡가능성은 없으며, 일반 재배종과 교잡이 된다하더라도 경실종자가 생성되지 않고, 생존력이 낮아 잡초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도입유전자의 확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출한 심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물재배환경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초제내성 옥수수 MON87411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작물재배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명	신청자	개발특성	접수일	심사완료일
-----	-----	------	-----	-------

제조제+해충저항성 옥수수 MON 87411	몬산토코리아(유)	제조제+해충저항성	2014-08-05	2016-05-12
----------------------------	-----------	-----------	------------	------------